



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

[시행 2017. 10. 19.] [경상북도조례 제4008호, 2017. 10. 19., 제정]

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종농작물"이란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, 농산물, 가공품을 말한다.
2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3. "농업인 등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경상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경상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·관리 및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제4조(보존·육성계획 수립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 및 보급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토종농작물의 조사, 관리, 재배현황에 관한 사항
 2.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3.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□ 제5조(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·육성과 생산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1.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 2. 토종농작물의 종자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협의회는 업무담당국장, 농업자원관리원장, 농업인대표 등 10명이내로 구성한다.
- ④ 협의회 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-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□ **제6조(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)**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 가공업·유통업·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□ **제7조(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 사업)**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농업인 등이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·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□ **제8조(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)**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□ **제9조(준용)**

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제10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17.10.1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